

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·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18개 통·리 증설에 따른 통·리장 18명 증원(안 별표)

- 당초 : 649개 통·리장(통장 473, 리장 176)
- 변경 : 667개 통·리장(통장 485, 리장 182)
 - 선산 1, 고아 2, 산동 3, 형곡1동 2, 신평2동 1, 비산 3, 진미 3, 양포 3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통리반 증감에 따른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선산읍 교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교2리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교리	2	교1리	교1리 일원
		교2리	교2리 일원

별표 중 고아읍 문성리 문성1리란부터 문성6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문성7리
란과 문성8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문성리	8	문성1리	문성1리 일원
		문성2리	문성2리 일원
		문성3리	문성3리 일원
		문성4리	문성4리 일원
		문성5리	문성5리 일원
		문성6리	문성6리 일원
		문성7리	문성7리 일원
		문성8리	문성8리 일원

별표 중 산동면 인덕리 인덕1리란부터 인덕3리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
하고, 인덕4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인덕리	4	인덕1리	인덕1리 일원
		인덕2리	인덕2리 일원
		인덕3리	인덕3리 일원
		인덕4리	인덕4리 일원

별표 중 산동면 신당리 신당1리란과 신당2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신당3리란과 신당4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신당리	4	신당1리	신당1리 일원
		신당2리	신당2리 일원
		신당3리	신당3리 일원
		신당4리	신당4리 일원

별표 중 형곡1동란에 24통란과 25통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4	1	24통 구역일원
25	1	25통 구역일원

별표 중 신평2동란에 8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	1	8통 구역일원
---	---	---------

별표 중 비산동란에 9통란부터 11통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	1	9통 구역일원
10	1	10통 구역일원
11	1	11통 구역일원

별표 중 진미동란에 24통란부터 26통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4	1	24통 구역일원
25	1	25통 구역일원
26	1	26통 구역일원

별표 중 양포동란에 54통란부터 56통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4	1	54통 구역일원
55	1	55통 구역일원
56	1	56통 구역일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 "행정면"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81조(이장의 임명)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이 임명한다.

③ 읍장·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통리장 18명 증원으로 통리장 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 세출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통리장 수당 지급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게 된 세출예산이
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

- 산출내역 (단위 : 천원)

내 용	산출내역	금액
합 계		59,040
통리장 수당	200,000원×18명×12개월	43,200
회의수당	40,000원×18명×12개월	8,640
상여금(100% 2회)	200,000원×18명×2회	7,200

4. 작성자

- 총무과 시정계 임정희(480-6767)

소관 실 · 과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유 익 수
	담 당	박 주 영
	담 당 자	임 정 희 (480-6767)